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심사보고서

□ 심사경과

1. 심사일정

- 가. 제안자 : 부천시장
- 나. 회부일자 : 95. 3. 17
- 다. 상정일자 : 95. 3. 24
- 라. 의결일자 : 95. 3. 24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설명자 : 산업과장
- 나. 내 용
"동 조례 폐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장을 폐지하면 부지에 대한 대안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대안을 세워놓고 있지는 않지만 조례폐지 후 관계부서(회계과)와 충분한 검토 후 조치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처리 대안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서(회계과)와 검토하고 있음

4. 토론요지

- 가. 반대토론 : 없 음
- 나. 찬성토론 : 없 음

5. 수정안 내용 : 없 음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365
의결	95. 3. 28
년월일	(제36회)

제출년월일 : 1994. 3. 17

제출자 : 부천시장

제안이유

94. 7. 1자로 부천시도축장(원미구 춘의동 66-1소재)이 폐쇄됨에 따라 관영도축장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제정되었던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의 기능 상실로 조례를 폐지코자 함

주요급자

“동조례 폐지”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경과

1. 심사일정

가. 제안자 :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95. 3. 17

다. 상정일자 : 95. 3. 24

라. 의결일자 : 95. 3. 24